

建築士 報酬의 虛와實

崔 昌 奎

建築士의 報酬라는 問題는 $1+1=2$ 라는 初等数学的 으로 풀이할 性質의 것이 못된다. $1+1=0$ 도 되고 $1+1=10$ 도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報酬라고 한다면 그 對象이 될 業務가 있어야 겠고 그 業務가 職業的인 것인 商業的인 것인 또는 創意的인 것인의 規定짓고 始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에 말한 規定의 結果 如何에 따라서 報酬가 될는지 代價가 될는지 謝禮가 되든지 間에 그 名稱을 設定해야 할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問題가 正式으로 規定化된 것은 그리 오랜일은 아니다. 約20年前 韓國建築家協會가 創作의 報酬表를 作成해서 會員間에 나마 適用토록 해야 겠다는 必要에 따라 世界先進國의 例를 調查해서 (일본, 영국, 블란서, 둑일)等 当時의 우리나라의 物価나 社會의 狀況에 알맞게 作成해서 會員間에 協力해서 實踐하기로 約束한바 있다.

勿論 이 料率表는 建築創作 依頼者에게 받을 代價의 下限線을 規定한데 不過한 것이고 그 以上的 것은 無限으로 依頼主와의 相互同意에 依한다는 것은 常識적으로 되어 있었고 当時政府의 該當官廳이나 또는 社會에 関聯된 어떠한 範疇도 制度도 없었든 때 이였기 때문에 官이 發注하는 建築設計가 있을 時는 늘 말성이 일어나곤 한것이었다. 例를 들면 某官廳에서 建築設計가 있어 家協會員이 그 依頼를 받으면 官이 一方의으로 根拠도 없이 얼마에 해라하는 式이여서 家協이 自律의으로 制作한 報酬表를 提示하고 要求하면 반듯이 이 表를 누가 認定할 수 있는가? 라고 反問하고 認定하지 않으려고 했다.

따라서 官이 提示한 金額도 各樣各色이여서 그것도 누가 認定할 수 있는거라고 反論하고 甚至於는 政府該當機関에서 그러한 規定하나도 制定 못하고 家協이 制定한 것도 認定못한다면 어찌할 것인가는 等의 論難이 双方에서 오가고 했다.

多幸히도 約10年前 建築士協이 創立되고는 그래도 主務部長官의 認可란 活字가 찍힌 建築士 報酬料率表가 制定되어 이 問題가若干의 整理段階에 오른듯 했다.

허나 이 料率表도 數次의 改正을 거쳤고 또 會員들의 競争으로 因한 “Dumping”과 官이나 団體의 独善의 見解로서 그대로 實踐은 되지 못했으면서도 그래도 어느 程度의 輪廓은 잡혀갔고 近者에 와서는 主務官署의 告示로 되여 이를 違反하면 違法이라는 線까지 왔다는 것은 不幸中 多幸한 일이라 해야 하겠다.

現즉 告示된 이 料率表도 100% 實行되고 있는 못한 것이고 그 理由는 許多하겠지만, 原初의으로 建築創作設計라는 業務의 本質이 너무도 多樣復雜하다는 데에 起因함이 큰것이고 會員間의 情實이나 競争또는 官이나 企業體의 独善이나 没理解等等 数많은 狀況속에서 現行報酬料率의 定立이 잘 안되는 데에서 몇가지 項目別로 그 問題點을 찾아 볼까 하는 것이다.

첫째, 建築設計를 創作으로 認定하느냐?

序頭에 말 한바와 같이 建築設計行為를 行政業務로 取扱한다면 当然히 報酬라고 해야 겠고, 建築設計가 商商위라고 한다면 마땅히 代金이라고 稱해야 겠고 創作活動이라고 한다면 謝禮라고 해야 할것이라 생각된다.

현데 現行報酬料率告示表는 그 内容이 模糊하다, 創作이라고 認定하는 것도 같고 行政業務로 取扱 받는 것도 같은 印象이다. 이런 模糊한 点이 即 問題를 일으키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만같다.

이 料率表를 作成할 때에는 (前記 家協表가 基幹이 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努力과 調査와 意見과 時間이 消費되여서 또 複雜한 節次와 交涉을 거쳐서 告示에 까지 이르게 된것도 事実이지만 이런 雜產의 玉童子를 現社會가 認定하기에 인색한데서 問題가 되고 있다.

勿論 建築設計自體가 複雜하다는데 起因도 되겠지만 建築士의 日當이나 事務室의 運營費나 消耗品의 多寡等의 原價計算을 들먹이든지 図面枚数나 附帶書類의 種類나 部數云云한다든지 總工事費의 內訳에 設備機械類의 価格을 除減한다든지 特히 計劃設計와 基本設計의 限界的 不透明이라든지 監理나 許可手續의 包含 与否等等의 複雜한 問題들을 結附시켜서 問題를 더욱 難解하게 하는 따

위나 또는 우리 經濟法規에 創作 隨意契約法이 없다는 点을 들어서 入札을 시킨다든지 如何間 創作이라고 認識못하는데서 일어나는 副作用들이 바로 이 問題를 社會問題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萬一創作業務라고 認定한다면 上記諸問題들은 自動的으로 解消될 것인데도 不拘하고 創作이란 概念조차도 갖지 못하는 데서 入札이니 下限線이니 行政代理니 等等의 問題를 提起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創作이라고 認定만 한다면은 図面枚数니 附帶書類의 部數니 하물며 入札 따위는 생각 조차 할 必要가 없을 것이고, 業務의 原価 計算이니 独寡占云云等이 있을수가 없어 질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이웃 日本에서 國會議員 몇몇이 建築設計가 独寡占行為라고 들먹인지 오래되고 이를 法制化 할려고 長期間 努力했지만 그 結實을 못 본 것은 日本社會가 建築設計 행위를 創作으로 認定하고 있다는 証據이기도 하며 부럽기만한 일이라 하겠다. 絵畫나 彫刻이나 文學에서 入札이나 料率이 있었는가 그림의 크기로 價格을 定한 일이 있었든가 小說이나 詩가 그 長短으로 價値가 決定된 일이 이 地球上 어느 나라에 있었는가? 反問하고 싶은 心境이다.

우리는 嚴然히 該當 主務長官의 告示로 된 料率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會員自身들이나 社會가 이를 지키지 않는 데는 어떤 理由가 있을까?

둘째, 會員自身의 姿勢와 專門性과 誠實性은 어떤가? 우리는 自省 없이는 이 問題를 解決할 方途가 없다. 우리 會員들이 設計에 臨하는 姿勢나 態度다, 專門職으로서의 誠實性与否가 어떤 時間이 지난後 社會나 依賴主에게서 信賴感과 尊教과 權威를 認定 받을때 料率表 따위는 問題가 안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 社會는 한마디로 權威意識에 찬 社會라고도 할수 있다. 權威란 그部門에 있어서는 追從을 不許하는 程度까지는 못가드라도 情力과 誠實度 如何에 따라서는 補充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會員들의 零細性에서 社會의 經濟意識構造에 따라 競爭이 따라오고 競爭에 따라 “dump”이 따르고 “dump”에 따라 不誠實이 오고, 不信이 오고, 이어서 멸시라는 図式은 人間共通의 常道이다.

이러한 社會의 鉄則을 打開했을때는 信賴와 尊敬과 權威가 따른다는 것과 이때 下限線을 規定한 料率表는 問題外가 되고 依賴主와의 相互合意에 따라 報酬는 代價은 謝禮든 그各自에 拘碍없이 自己의 権益은 옹호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 되겠으나 여기에 時間과 過程과 手段이 所要되는 것이므로 短時日間의 掘速으로 不可能한 難事中의 難事인 것이다.

셋째, 우리에게 著作權法은 어떤 作用을 하는 것인가? 우리 社會에 著作權法이 嚴存하고 있다. 即 建築設計行為가 創作이라고前提하고 이 法은 우리에게 比重있게 作用하고 있는 것인데 事實上 우리는 그 内容을 잘 모르고 있다.

建国以後 日帝時의 著作權法이 存續해 오다가 近者 文公部에서 改正 作業을 해서 定立시켜져 있다. 무릇 創作業務에 있어서 그 作品의 著作權은 永久히 作家에게 있다는 骨字의 法이다.

廣義의 著作權이란 그 作家의 人格權도 包含되기 때문에 買賣나 讓度를 하고 싶어도 人格까지 買賣나 讓渡 할 수 없는데서 永久히 作家에게 있다는 것이고 依賴主나 要求者에겐 一回에 限한 使用權을 換価한다는 것이지 著作權마저 준것은 아니라는 것이 明記되어 있다. 바로 이 著作權法의 發動은 우리의 創作設計의 報酬와도 関聯시켜 아파땅한 것인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建築設計自體가 다른 文化藝術의 作品들과 그 性格內容이 若干判異한 것은 事實이나 創作이라는 大意에는 變함이 없는限 이 法의 該當條項이 告示된 報酬料率表에 明記되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建築設計가 創作業務라는 것을 確認시키는 方法이고 確証시키므로서 本問題의 難解를 解消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것들여서 懸賞設計의 境遇에는 絶對的인 保護를 받을수 있는 法이기 때문이다. 이 法의 立法趣旨나 精神은 創作을 振作 시키고 保護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넷째, 設計의 附帶業務를 一括시켜야만 하는가?

前述한바와 같이 建築設計에는 基本設計 計劃, 本設計의 三段階의 過程이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거나 附帶의 業務 또한 無觀 못할 程度로 複雜하고, 多樣하다, 即 監理 問題許可代行 問題 工事費積算 問題, 各種工學의 計算 問題 등 難解의 問題들이 設計와 同一視되고 一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現實에서, 外國의 例를 들必要도 없거니와, 現社會가 專門分業化되어가고 있는 此際에 唯獨建築設計만이 萬能의 業務가 될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附帶의 業務들을 別해서 該當事項別 料率을 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特히 監理에 對한 問題는 더욱 区分되어야 할 것이며 監理業務界限의 確立이 先決되어야만 하겠다. 社會는 監理와 監督을 混同하고 있다. 이에 對한 確固한 限界가 없으므로 해서 더욱 어렵게 되여가고 각已立場에 따라 見解가 달라지므로 해서 더욱 混雜은 차아내고 있다.

이 問題야 말로 早速히 設計業務와 分離시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며 許可代行 問題 亦是 그러하다. 即 現行의 許可書類는 建築主名義로 提出케 되는 것을 建築士가 代行하는데 設計報酬에 一括시켜므로서 許可是 当然히 建築士가 내는 것으로 常識化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行政代書에 屬하는 業務이지 創作業務와는 関係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先進外國의 例를 들必要조차 없는 性質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官, 民의 設計報酬에 대한 意識은? 官이나 社會는 自己들의 立場에서 独善의이고 一方의 境偶가 많다 仮令 確固한 告示料率이 發表된 直後(아마도 78年度)某地方에서 일어난 陳情騷動을 記憶하고 있다. 社會의 모든 物価가 上昇하고 있는때에 設計 料率이 引上되자 陳情沙汰가 일어난 것은 웬일인가, 이 裏面에는 理由나 要因은 많겠지만, 直接的으로는 建築士란 規定된 돈만 주면 自己들이 해달라는 데로 해주는, 萬能의 專門職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것이다. 이때까지 적은 金額으로도 해주든 것을 一朝에 引上된 料率을 团合해서 “덤핑”을 안하니 陳情騷動이 일어 날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記憶한다. 무릇 官主導型의 우리社会에서는 官이 制定한 規定이니率先實行할 때 비로서 民은 自動的으로 따라 갈줄 믿는 것이다. 더우기 民은 目前의 利에만 置重하고 時間이 経過된 後의 實質的인 利에는 어두운 傾向이 있다. 量과 質, 過程과 結果, 手段과 方法, 書式과 節次等의 複合的인 与件의 判異한 時間과 余裕가 없는 社會実情에서 理解는 가지만 窮局的으로는 損害을 본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 같다.

여섯째, 總工事費의 算定은 누가 하는가? 設計報酬料率의 基本은 總工事費額에 결여있다 이 總工事費額에 100分率을 곱하면 報酬額이 算出된다. 따라서 總工事費額의 多寡는 即 報酬額에 直結되는데 大概의 境偶 工事子算이 責定되고 設計가着手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予想額이고 設計完了後 建築士가 그 設計圖에 依해 積算한 最終額이 實質的인 總工事費가 되는 것이 當然한데 우린 設計도 完了되기 前에 設計契約書에 予想工事費 總額에다 料率 100分率을 곱해서 金額을 明記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으나 原則的으로 본다면 契約書에도 百分率로 明記하고 總工事費가 算定된 다음 金額을 清算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先進外國에서 그렇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建築士와 建築主間에 問題가 되는 것은 設計契約書에 予想金額을 記入하고 設計完了後 總工事費가 決定되면 計算이 맞지 않은 境偶가 許多하고 또는 途中에 變更이나 追加가 있을 때는 問題가 이러나게 마련이다. 萬一 百分率로만 한다면 그런 것에 拘碍됨이 없이 整算할 수가 있다는 利点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現行 우리社会에서는 建築主의 横暴라고나 할까 總工事費의 定義는 一方的으로 내리는 傾向인데 曰工事施工落札 金額을 總工事費라고 한다든지 自體計酬予算을 總工事費라고 한다든지 하는 억지를 써서若干이라도 設計報酬를 적게 하려고 가진手段을 다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甚至於는 設備機械나 器具等은 既存品을 設計에 反映하는 것이니 그 價金을 除한 것을 總工事費라고 한다든지 하는 式의 行為들이다. 이 글의 題目이 “建築士 報酬의 虛와 実”이라면 當然히 總工事費(報酬의 計算基準인)의 定義부터 正確히 해

야 한다는 点이 되겠다. 이것은 反問의 余地 없이 總工事費란 「設計者가 設計된 図書에 依據 算出한 總工事費를 말한다」 余他의 어떤 理由도 이 定義에 対抗할 수 없다는 認識이 앞서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現行料率은 妥當한가?

士協에서 通用되고 있는 建築士 業務 및 報酬基準은 1966年 7月에 建設部長官認可指令 444~1~5号로 發表된 以來 1968年11月에 一次正改, 1971年1月에 2次改正이 되었고 1975年 12月에 三次改正이 되여 建設部告示第197号로 發效되어 現行에 이르고 있다. 그 改正 内容을 보면 建築種別 工事費總額別로 百分率로 作成되어 있고 改正時마다 若干의 係數의 變動과 業務区分의 變動이若干式 있을 뿐이다. 或者는 現行報酬率이 높다고 한다. (大概의 境偶 官이나 建築主側이지만) 即 設計內容의 水準이 낮다는 것과 創意的인 面이 적다는 点을 그 理由로 들고 있다.

그들에 反問하거니와 設計內容의 水準이나 創意 度의 比較對象은 무엇이며 어느나라냐고 萬一 그 대상이 國際的 水準이고 創意度가 先進國이라면 다시 反問 하거니와 國際의이든 先進國들의 報酬料率이 몇%인가를 알고 있느냐고 묻고 싶다.

一言하고 現行料率은 우리나라의 狀況과 与件에서 우리 建築士들의 能力과 質面에서 보아도 낮다는 것을 斷言하고 싶다. 社會의 物価나 人件費나 消耗品이나 稅率等을 考慮할 때, 또는 建築主의 横暴나 独善을 勘察할 때 物質的 經濟的 精神的 面에서 當하고 있는 点을 생각할 때 現行料率이 높다고 생각될 何等의 明分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구태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建築士들이 낮은 料率마저도 “덤핑”하고 있지 않느냐는 点을 들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덤핑”과 料率의 高低를 結付시킨다면 原価計算을 해서 現實化시키겠다는 뜻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萬一 設計料率을 現實化한다면 問題는 커질 것이다. 即 建築文化니 建設產業니 또는 建築이나 建設에 関聯되는 모든 部門이 滞滯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先進各國들이 이미 歷史的으로 經驗한 바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結論, 어떻게 하여야 옳은 것일까?

한마디로 現行 料率을大幅改正해야 한다. 即 建物種類의 区分을 整備하고 綜合建築이란 項을 追加시키고 (現代의 大規模의 建築物은 多目的이란 名目下에 各種의 機能이 包含되어 가므로서) 가장 高率을 適用해야 하며 創作이라는 点에 比重 무겁게 두어야 하며 附帶의in 書類나 行政節次 等은 別途로 分區해서 現實化시키고 一括해서 設計로 看做해서는 不可이다.

即 構造計算, 積算 示方, 監理, 各種計算, 書類 許可節次代行等은 種別로 現實에 맞게 그 時 그 時 社會与件에 適應케 하는 것 이고 오직 創作의in 面에 만은 不可侵

해야 한다고 생각 된다.

그렇게 하므로서 窮極的으로 建築主가 水準과 質이 높은 建物을 얻을수가 있으니 利益이 될것이고 国家나 社会의으로 建築文化나 建設產業의 隆興을 期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建築士는 設計를 天職으로 알고 自己의 專攻한 知識과 能力과 誠意를 總力投球해서 過競爭 없이 試実히 創作業務에 充實할때 만이 우리 権威나 專門

職으로서의 珍持를 되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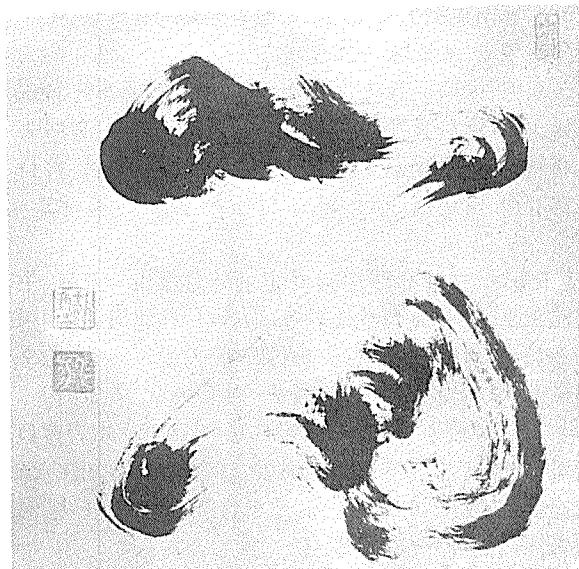
現今 벤두리에서 우리 회원들이 設計報酬를 建坪當 열마라는 式의 말이 流布되어 市民(建築主)들도 建築設計費를坪當으로 하는 것인줄 알고 있다면 이것은 남을 나무래기 前에自身들이 먼저 自覺自肅해야 할일 줄 안다.

신진건축연구소 대표

第二回 墨象展 心象 朴商浩

略歷

- 三十三年 釜山 生
- 서울大學校 建築科 卒
- 韓國建築家協會 正會員
- 大韓建築士協會 正會員
- 韓國엔지니어크럽 正會員
- 石林愛石會 會長
- 國際라이온스크럽 309 - A 地區(연남) 正會員
- 弘益工業專門大學 講師
- 石林建築造景研究所 代表
- 第一回 墨象展 七七年九月(서울喜画廊)
- 第二回 墨象展 七九年六月(서울그로리치画廊)



1979. 6. 12 - 18 (그로리치画廊)